

#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기간 2023.01 ~ 2024.12		
사업내용	○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(9번,11번)출입구 사용료		
사업비 (당해년도)	380,050천원	(국비)	(사비)380,05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재난안전관리실	도로시설과	고영준 2133-1650	김태우 2133-1680	최준호 2133-1682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2 예산 설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3예산액 (A)	2024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373,601	(x-) 380,050	(x-) 6,449	(x-) 2
사무관리비	(x-) 373,601	(x-) 380,050	(x-) 6,449	(x-) 2

### 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	
사무관리비	○ 출입구사용료 380,050,000원	=	380,050천원

### 3 사업 설명

#### □ 사업목적

- 터미널상가 출입구 소송관련 대법원 판결에 의한 사용료납부 법적의무 이행 및 출입구 기능을 유지하여 이용시민의 보행불편 예방 등
- 사용면적 : 495.9㎡ (9번 : 231.1㎡, 11번 : 264.8㎡)

#### 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(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)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 - “강남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부당이득금반환 소송” 판결 (대법원2014230948 제27민사부 ‘부당이득금 반환 등’)

#### □ 사업내용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
- 규 모 : 출입구 사용 면적 495.9㎡ (9번 출입구 231.1㎡, 11번 출입구 264.8㎡)
- 사업기간 : 2024.1 ~ 12월 (12개월)
- 사업내용 :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지급
- 총사업비 : 380백만원

#### □ 추진경위

- '76. 3.25 : 서울고속버스터미널(주)에서 매입하고 '83.6.27. 등기
- '77.10.26 : 도시계획시설결정(지하도 및 출입구)
- '80. 6.24 :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준공
- '13. 4.22. : 고속터미널(주)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
- '15. 2.12. : 대법원 최종판결(패소)
- '15. 2.24. : 판결금 청구(3,881,983,900원) → 지급('15.3.13)

#### □ 2024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380,050	
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	2024.01~2024.12	380,050	서울고속터미널(주)에 월별 사용료 지급

## 4

사업 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21년도	○ 시민의 보행편의 제공
2022년도	○ 시민의 보행편의 제공
2023년도	○ 시민의 보행편의 제공

향후 기대효과

-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(점용료)를 납부하여 기능유지 및 이용 시민의 불편 예방

## 5

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20	(x-) 356,300	(x-) 0	(x-) 0	(x-) 356,300	(x-) 342,197	(x-) 0	(x-) 14,103
2021	(x-) 345,600	(x-) 0	(x-) 0	(x-) 345,600	(x-) 343,860	(x-) 0	(x-) 1,740
2022	(x-) 352,454	(x-) 0	(x-) 0	(x-) 352,454	(x-) 352,453	(x-) 0	(x-) 1